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71
----------	-------

발의연월일 : 2026. 2. 9.

발 의 자 : 신장식 · 김선민 · 황운하
박은정 · 서왕진 · 차규근
백선희 · 강경숙 · 정춘생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그 직무 범위를 정한 법률에 조사권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참고인의 출석 요청, 의견청취, 필요한 물건이나 자료의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공정위의 조사는 강제수사와는 달리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반하는 경우 사후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조사 상대방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공정위가 조사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업무의 성격상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정위에 조사권한을 부여한 개별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한 사항을 조사·단속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단속에 관한 사무

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조사·단속에 관한 사무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도급거래질서에 대한 조사·단속에 관한 사무

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맹사업거래질서에 대한 조사·단속에 관한 사무

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 다단계판매 등에 대한 조사·단속에 관한 사무

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대한 조사·단속에 관한 사무

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불공정한 내용의 약

관 등에 대한 조사·단속에 관한 사무

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

부계약에 의한 거래에 대한 조사·단속에 관한 사무

제6조에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 제5조제5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범죄는 제외한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 ----- ----- ----- ----- ----- ----- ----- ----- --.
1. ~ 53. (생략)	1. ~ 53. (현행과 같음)
<u><신설></u>	54. <u>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u>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단속에 관한 사무

나. 「표시·광고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조사·단속에 관한 사무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
도급거래질서에 대한 조사
· 단속에 관한 사무

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
된 가맹사업 거래질서에
대한 조사·단속에 관한
사무

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방문판
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판매 등에 대한 조사·단
속에 관한 사무

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전자상거래, 통
신판매 등에 대한 조사·
단속에 관한 사무

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불공정한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 50. (생략)

<신설>

내용의 약관 등에 대한 조

사·단속에 관한 사무

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에 대한 조사·단속에 관한 사무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

1. ~ 50. (현행과 같음)

51. 제5조제5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범죄는 제외한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u>화에 관한 법률」</u> 마. 「<u>방문판매 등에 관한</u> <u>법률」</u> 바. 「<u>전자상거래 등에서의</u> <u>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u> 사. 「<u>약관의 규제에 관한</u> <u>법률」</u> 아. 「<u>할부거래에 관한 법</u> <u>률」</u>
--	--